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 형성 논의와 우리의 대응¹⁾

정서용¹⁾·박영규²⁾*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with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hung, Suh-Yong · Park, Young-Gyu

- 1) 고려대학교 국제학부(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 2) 명지대학교 법과대학(College of law, Myoungji University)

제 출 : 2009년 7월 28일 승 인 : 2009년 11월 26일

국 문 요 약

현대사회에서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내에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필요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비구속적 성격의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을 대체할 수 있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레짐(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가 2010년 타결을 목표로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상의 논의는 물론이고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법 상의 논의를 면밀히 살피고 이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는 유전자원 이용 국으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ABS 국제레짐 형성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과 함께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즉, 이익공유와 접근 문제가 공히 보장될 수 있는 ABS 국제레짐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원 이용과 접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ABS 국제레짐, 생물다양성협약, 지적재산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범정부 지원단

1) 이 글은 환경부 연구용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국제레짐(안) 분석을 통한 국내 대응전략 마련」(2008)에 바탕을 두고 있음.

Abstract

As commercial use of genetic resources increases in modern society, calls for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thereof have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particularly from developing countries. As a result, negotiations have been ongoing for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 for genetic resources as a successor to the non-binding Bonn Guideline. 2010 has been set as the target date for the Agreement. As South Korea is more likely to be a user country of genetic resources, it will be necessary for it to take part in the negotiating process and contribute to creating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BS, to ensure both appropriat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there from. To develop appropriate response strategies for South Korea, it is critical not only to closely examine the negoti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BD but also to engage in discussions within the scope of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omestic legislation. To achieve this goal, it is imperative for South Korea to form a comprehensive Government Response System, composed of relevant governmental bod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tc.

■ **Keywords** ■ Access and Benefit Sharing(ABS), International Regime on AB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outh Korea, Government Response System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많은 미생물, 식물 혹은 동물 종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의 유전정보도 빠르게 해독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과 분자생물학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활성물질로서 식물의 유전자 등이 새로운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등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전자원은 선진국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상업적 이용의 원천인 천연물질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미생물, 식물, 동물 및 이들의 유전자를 이용한 상업적 이익이 자신들의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1993년 비정부기구인 국제농촌진흥재단(Rural Advancement Foundation International; RAFI)은 선진국 혹은 선진국 기업에 의한 유전자원의 일방적 이용은 생물해적행위(Biopiracy)²⁾라고

2) 유전자원에 내재된 자체의 창조성 및 수세대에 걸쳐 유전자원을 활용하고 개량한 공동체의 노력은 무시된 채 단지 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진 노력만을 인정하여 독점·배타권 등을 부여하고, 그 결과 유전자원을 소유하고 활용해온 공동체에까지 경제적인 침탈이 이루어지는 것을 빗대어 현 ETC(action group on Erosion, Technology and Concentration)의 전신인 국제농촌진흥재단의 회장이었던 Pat Mooney가 처음 사용한 용어임. 이에 대해서는 박용주, 2004. "DDA 지적권 분야 협상동향 -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을 활용한 특허의 출처공개를 중심으로 -" 『지식재산』, p.22 참조. 한편 유전자원 이용국들은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서 생물탐색(Bioprospecting)의 개념이 선진국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Dunagan, 2009, "Bioprospection versus Biopiracy and the Unites versus Brazil: Attempts at Creating an Intellectual Property

규정하기도 하였다.³⁾

유전자원을 둘러싼 이러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분쟁을 고려하여, 1993년 발효⁴⁾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benefit sharing),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이 귀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공동체의 사전 동의 문제에 대해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동 협약은 체결 당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참여한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에 구체적인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기보다는 상호 상충되는 이해의 균형을 위해 많은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항의 모호함과 전체적인 일관성의 결여로 협약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각 당사국은 2002년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결과 소위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이 채택되었다. 그렇지만 구속력이 결여된 본 가이드라인은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 간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제8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0년 제10차 당사국 총회까지 ABS 국제레짐에 관한 논의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여 해묵은 논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모았다. 현재의 논의가 성공적으로 종결된다면 아마도 ABS에 관한 새로운 의정서 형태의 국제조약이 탄생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체로 유전자원의 이용국으로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 형성 논의에서 우리의 적절한 입장을 마련해 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향후 2010년에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ABS 국제레짐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확정하고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ABS 국제레짐 형성에 기여는 물론 ABS 국제레짐이 확정 시 국내 이행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 논의의

System Applicable Worldwide When Differing Views Are Worlds Apart- And Irreconcilable?" *Law and Business Review of the Americas* 15: 603.

3) 이러한 생물해적행위의 개념은 제품해적질(Produktpiracy)의 개념으로부터 유래하고, 유전자원과 관련해서는 생물탐사(Bioprospecting) 또는 생물식민정책(Biocolonialism)이라는 용어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Blakeney, 1998, "Biodiversity Rights and Traditional Resourc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Bio-Science Law Review* 52: Aoki, 1998, "Neocolonialism, Anticommons Property, and Biopiracy in the (Not-So-Brave) New World Order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6: 11.

4) 2009년 4월 24일 현재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은 191개국이고,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 동 협약의 가입서를 기탁하였고, 1995년 1월 1일 동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http://www.biodiv.org/world/parties.asp> (2009.4.24 방문).

연혁을 살피고 현재의 협상 쟁점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ABS 국제레짐에 관한 논의가 생물다양성협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들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이에 바탕을 두고 향후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에 관한 논의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II.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

1. 유전자원, 전통지식의 개념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는 ‘유전물질(genetic material)’을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로,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을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로부터 유전자원은 유전물질의 일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⁵⁾ 상업적 이용을 위한 유전자원의 실제적 혹은 잠재적 가치는 유전정보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파생하는데, 이러한 유전정보에 대한 지식은 생명체의 유전정보가 해독되면서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일년생 축이 이미 오래 전부터 해열제 혹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는데, 유전정보에 대한 지식은 이러한 전통지식과 관련될 수도 있다.⁶⁾

또한 현재 그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 중인 전통지식⁷⁾을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j)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원주민 사회 및 현지사회의 지식, 혁신적 기술 및

5) 국립환경연구원 역. 1995.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해설서(UICN, A Guide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pp.47-48. 일반적으로 유전자원은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가치가 있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식물, 미생물, 동물 및 그 유전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병일. 2005. “전통지식과 특허” 『창작과 권리』 제39호, pp.2-5; 김병일. 2004.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26호, pp.143-146.

6)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의 중국에서의 사례에 대해서는 Zhou Lin. 2004. “중국에서의 전형적인 지식 보존: 식량과 농업에 대한 지적 자산을 중심으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법적 보호 - 2004년도 한·중 국제공동연구 보고서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 연구센터/중국사회과학원 지재권센터). pp.38-41.

7) 협의의 전통지식과 광의의 전통지식으로 구분하여, 협의의 전통지식을 이미 공유(public domain)로 된 것이 대부분인 “식물, 동물, 민간요법 그리고 의약적 치료, 영양 및 미용의 지식, 향료의 지식 등과 관련 있는 지식 및 관행”으로 광의의 전통지식을 협의의 전통지식에 민간전승물(folklore), 심볼, 혁신, 표지, 지리적 표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WIPO, 2000.9.14. “Traditional Knowledge and the Need to Give it Adequat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Doc. WO/GA/26/9): 6-7(http://www.wipo.int/edocs/mdocs/govbody/en/wo_ga_26/wo_ga_26_9.pdf) (2009.4.20) 참조.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지식은 경험에 의하여 발전되고 획득되며 아울러 수십, 수백 년에 걸쳐 그곳의 문화와 환경에 적용되어 세대를 거쳐 구술상 전달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⁸⁾ 이와는 달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좀 더 광의로 전통지식을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 공연, 발명, 과학적 발견, 디자인, 상표, 성명, 심볼(Symbol) 및 미공개정보 그리고 산업적,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영역에서의 정신적 행위로부터 유래하는 모든 다른 전통에 기반을 둔 혁신 및 창작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⁹⁾

요컨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개념은 보호의 대상 및 범위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아울러 개념 정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아직 통일된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¹⁰⁾ 이러한 통일적 개념의 결여는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협약 규정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의 유지와 사후적인 이용도 고려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의 핵심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는, 한편으로는 국가가 자신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 국가의 정부에 있음을(제15조 제1항), 다른 한편으로는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2항). 이로부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 국가의 정부에 있음은 명확하다. 하지만 생물다양성협약의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동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각 당사국의 권리는 절대적 권리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¹¹⁾

생물다양성협약상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상호 합의된 조건(Mutually Agreed Terms:

8) Götting. 2004. "Biodiversität und Patentrecht" *GRUR Int.*2004: pp731-732.

9) WIPO. 2001.4., "Intellectual Property Needs and Expectations of Tradi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Knowledge Holders: WIPO Report on Fact-finding Miss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Knowledge(1998/1999)"p.25.

10) 박영규. 2005.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허법의 역할" 『비교사법』 제12권 3호. pp.533, pp539-540.

11) Straus. 1998. "Biodivers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AIPPI Yearbook 1998/IX*, pp.99, pp102-103.

MAT)에 도달하고(제15조 제4항), 아울러 그 당사국의 사전통지에 의한 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¹²⁾을 받는 경우(제15조 제5항)에 한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인정되고 있다. 이처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5조 제7항). 이러한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지식, 기술 및 관행에 대한 승인과 이익 공유를 규정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j) 등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또한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제공한 유전자원에 기초한 과학적 연구를 그 당사국의 완전한 참여가 가능한 경우 그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개발·수행하도록 노력하고(제15조 제6항), 아울러 각 당사국은 생명공학의 연구 활동을 위하여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이 그러한 연구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가능한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 안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히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9조 제1항).¹³⁾ 또한 특허권 및 그 밖의 지적재산권이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특허권 및 그 밖의 지적재산권이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을 지원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 입법 및 국제법에 따라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6조 제5항). 아울러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이 상호 합의된 조건하에 특허 및 그 밖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된 기술을 포함하여 그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에 접근하거나 이전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제16조 제3항), 특허 및 그 밖의 지적재산권의 적용을 받는 기술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인정하고 그에 합치되는 조건으로 이러한 기술접근 및 이전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6조 제2항, 4항). 이러한 의미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를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 유전자원 자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인정과 기존의 지적재산권체제에 대한 이해조절의 필요성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¹⁴⁾

12) 사전통지에 의한 승인(PIC)에는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계약당사자의 동의, 잠재적인 유전자원 이용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에 기초한 동의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13) 제19조 제1항은 제15조 제6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14) 박영규, 2005.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허법의 역할” 『비교사법』 제12권 3호, pp.533, pp.546-547.

3.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

생물다양성협약은 각 당사국이 연구·개발의 결과와 유전자원의 상업적 및 그 밖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적절히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15조 제7항), 연구·개발의 결과와 유전자원의 상업적 및 그 밖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은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 공유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왔고, 이러한 결과로 2002년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이 채택되었다.¹⁵⁾ 본 가이드라인은 생물다양성협약의 각 당사국에게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해서 국내입법화를 촉진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본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향후 유전자원을 수집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유전자원 보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체약국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중요한 국제법적 문서로서 여겨져 왔다.¹⁶⁾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는 관계로 그 실효성에는 지속적인 한계를 보여 왔다.

4. ABS 국제레짐의 논의

1) 연혁

2002년 생물다양성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는 동 협약상 작업반(Open-Ended Working Group: OEWG) 회의에서 마련한 본 가이드라인안을 채택한 이후에도 동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련의 시도를 계속적으로 해 왔다. 2004년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본 가이드라인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15)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Bonn 지침에 대해서는 오윤석, 2004.6.25.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관한 고찰”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포럼/세미나 자료』, pp.1-17.

16) 이는 동 지침이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 제10조 (c), 제15조, 제16조와 제19조와 특별히 관련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체약국의 법률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와 접근, 이익 공유에 관한 상호 합의된 조건 하의 계약과 기타 협정초안의 개발을 목적(Bonn 지침 Nr. 1, Nr. 16(d))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방안의 모색,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인 상호 합의된 조건 (MAT) 및 사전통지승인(PIC)에 대한 구체화, 개도국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을 포함하여 ABS에 관한 국제레짐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¹⁷⁾ 이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지속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제8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ABS 국제레짐에 대한 협상을 2010년 제10차 당사국 총회까지는 종료하기로 정함으로써 ABS 국제레짐에 대한 협상 진행에 탄력이 부여되었다.¹⁸⁾ 제9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제10차 당사국 총회까지 협상을 종료할 것을 다시 한번 당사국들이 확인함으로써 본 가이드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의 탄생 가능성을 좀 더 증가시켰다.¹⁹⁾ 또한 협상 종료 시점까지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서 국제레짐 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이행준수, 개념·조건·정의 및 부분별 접근, 그리고 유전자원과 관련이 있는 전통지식에 관한 논의를 다루기 위한 3개의 전문가 그룹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들 전문가 그룹에서의 논의 결과는 국제레짐 협상에 탄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²⁰⁾ 또한 제9차 당사국 총회 이후 제10차 당사국 총회 이전까지 3번에 걸친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서 2009년 4월 파리에서 첫 번째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고,²¹⁾ 2009년 11월 및 2010년 3월에 각각 두 번째 및 세 번째 작업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2) 논의 내용

현재 ABS 국제레짐에 관한 논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은 제9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이다.²²⁾ 동 결정문에 따르면 국제레짐은 목적, 범위 및 주요 요소를 협상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17) COP 7 Decision VII/19, 2004.

18) COP 8 Decision VIII/4, 2006.

19) COP 9 Decision IX/12, 2008.

20) CBD, 2008, Report of the Meeting of the Group of Legal and Technical Experts on Concepts, Terms, Working Definitions and Sectoral Approaches, UNEP/CBD/WG-ABS/7/2, pp.1-56; CBD, 2009, Report of the Meeting of the Group of Legal and Technical Experts on Compliance 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UNEP/CBD/WG-ABS/7/3, pp.1-17.

21) CBD, 2009, Report of the Seventh Meeting of the Ad-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UNEP/CBDD/WG-ABS/7/8, pp.1-56.

22) COP 9 Decision IX/12, 2008.

(1) 목적 및 범위

현재 ABS 국제레짐의 목적에 관하여서는 적극적인 입장과 소극적인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파생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의 보장, 유전자원의 오·남용 방지, 의무준수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수단 보장 등을 포괄하는 것을 ABS 국제레짐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은 생물다양성협약에 충실하여 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ABS 국제레짐의 목적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²³⁾ 개도국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ABS 국제레짐의 범위에 관해서는 세 가지의 옵션이 논의되고 있다. 첫 번째 옵션은 자세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ABS 국제레짐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ABS 국제레짐이 좀 더 포괄적인 범위를 다룰 가능성에 대한 존중 및 향후 ABS 국제레짐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옵션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옵션 중 가장 좁은 범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이 견해는 생물다양성협약상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혁신 및 관행에 대해서만 ABS 국제레짐이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두 가지 옵션의 중간 범위에서 ABS 국제레짐의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양 옵션의 절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다.

(2) 주요 요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이익공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행준수, 전통지식, 능력형성 등 소위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이다. 이들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서 2010년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ABS 국제레짐에 대한 합의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유전자원의 접근에 관하여서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에 의해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이 해당 당사국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유국의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개도국 입장과 접근 가능성의 불필요한 제한을 피하려는 선진국 간 입장 차이가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논의는 두 문제의 연계를 통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특히 선진국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행준수 문제는 ABS 국제레짐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²⁴⁾ 그간

23) 이 입장의 경우에도 EU 등의 선진국과, 일본·호주 등 선진국 입장이 다른데 후자의 경우는 반대에 가까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4) CBD. 2009. Report of the Meeting of the Group of Legal and Technical Experts on Compliance in the Context of the

이행준수 문제에 관하여 사전 통지 승인(PIC) 및 상호 합의된 조건(MAT) 이행지원을 위한 조치, 원산지·출처·법적 기원 인증제도 및 모니터링, 이행준수 및 분쟁 해결이 이행준수 관련 문제로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행준수에 관한 논의 수준은 개도국 중심으로 국내법상 처벌 조항을 다른 국가에서도 원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통상 다른 국제 환경조약 체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을 훨씬 상회하여 논의되고 있으나 선진국들의 반발이 심하고 다른 환경조약 체제에서 이행준수 체제와의 균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최종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 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문제는 이미 WIPO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WIPO를 통하여 해결하기를 원하는 입장과 생물다양성협약의 ABS 국제레짐을 통하여 독자적인 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도국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²⁵⁾ 또한 능력형성 문제는 ABS 국제레짐에 대한 주요 요소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문제이지만 선진국은 개도국의 능력배양의 원칙론을 강조하는 반면 개도국은 능력배양과 기술이전에 대한 강제적 최고 요건 마련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²⁶⁾ 마지막으로 ABS 국제레짐의 성격(nature)에 대해서는 개도국이 구속력이 있는 레짐의 형성을 원하는 반면 선진국 그룹은 이 문제는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 생물다양성협약 내에서 ABS 국제레짐 형성을 위하여 그동안 당사국들이 들여온 노력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ABS 국제레짐의 등장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단지 여타의 논의 의제들에 대해서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 간에 어떻게 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International Regime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UNEP/CBD/WG-ABS/7/3, pp.1-56.

25) ABS 국제레짐 논의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CBD. 2003.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rrangements, including National and Regional Experiences, UNEP/CBD/WG-ABS/2/3, pp.1-30; CBD. 2001. Report on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mplementation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Arrangements, UNEP/CBD/WG-ABS/1/4, pp.1-20; WIPO, 2000, Traditional Knowledge and the Need to Give it Adequat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WO/GA/26/9, pp.1-21; WIPO, 2001, "Intellectual Property Needs and Expectations of Tradi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Knowledge Holders: WIPO Report on Fact-finding Miss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Knowledge," pp.1-99.

26) 능력형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CBD. 2002. Report of the Open-ended Expert Workshop on Capacity-Building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UNEP/CBD/ABS/EW-CB/1/3, pp.1-16.

표1 ABS 국제레짐의 주요 논의 의제

목적	협약 목적 범위 내 구체화 vs. 협약보다 적극적인 목적	
범위	협약상 범위에 한정, 폭넓은 범위, 절충안	
주요요소	상세화 항목	추가 논의 사항
이익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과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연계 • MAT • 금전 및 비금전적 이익 • MAT에 관한 연구 개발 결과의 공유 • 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메커니즘 • 인식 제고 • 이익공유에서 원주민 및 지방공동체 참여보장 • MDG와 국내법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케 할 수 있는 이익 증진 메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최소 조건 및 기준 개발 • 모든 이용에 대한 이익 공유 • 출처 불확실하거나 유전자원 출처가 여러 국가인 경우 다자 이익 공유 옵션 • 월경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신탁기금 설치 • 물질 이전을 위한 부문별 표준모델 개발 • 본 가이드라인 활용 증대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 여부에 대한 결정에서 주권적 권리와 권한의 연계 • 이익 공유와 접근의 연계 • 접근에 대한 법적 확실성, 명료성 및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 규칙에 대한 비차별성 • 각국 국내법 통일화에 이르지 않은 국가 관할권을 넘어서는 이행 준수 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 • 모델 국내법의 개발 • 행정 및 거래 비용의 최소화 • 비 상업적 연구를 위한 접근 규칙의 간소화
이행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제고를 비롯한 이행준수 제고 방안 • 정보 공유 메커니즘, 국제공인 인증제도와 같은 이행준수 모니터링 수단의 개발 • 이행준수 강제 수단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준수 제고 방안의 개발 • 이행준수 모니터링 수단의 개발 • 이행준수 강제 수단의 개발 • 관습법과 지역 보호제도 준수 수단
전통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제8조 (j) 상 이익 공유 보장수단 • 공동체 절차에 따른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보장 수단 • 이익 공유 차원에서 전통지식 이용문제를 다루는 수단 • ABS 관련 연구에서 전통지식에 대한 존중과 관련된 사례 • MTA에 전통지식 포함 • 공동체 절차에 따른 접근을 보장하는 개인 또는 관련 기관의 확인 • 전통지식 보유자의 승인에 대한 접근 • 전통지식에 대해 조정되거나 강제된 접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보장 시 전통지식 보유자와의 PIC 및 MAT • 국내법과 정책개발에서 당사국 지원을 위한 국제적으로 개발된 가이드라인 • 국제 공인 인증서 발행 시 전통지식 관련성 여부 및 그 보유자에 대한 확인(declaration) • 전통지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동체 수준에서의 배분
능력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배양에 관한 항복 • 최소 능력배양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기 위한 국가 능력 자체 평가 • 기술 이전 및 협력 수단 • 물질 이전 협정상 잠재적으로 포함이 되는 모델 저장에 대한 메뉴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메커니즘의 설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레짐의 구속력 여부 • 사안별 구속력 부여 여부 	

주: ABS 국제레짐의 주요 논의 의제는 제9차 당사국 총회 결정 IX/12의 부속서 I을 정리한 것임. COP 9 Decision IX/12, 2008.

Ⅲ.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법에서의 논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등의 보호가 새로운 논의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하여 생물다양성협약뿐만 아니라 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égétales; UPOV)²⁷⁾,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등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진행 중인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에 관한 논의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예컨대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적극적인 보호 수단을 지적재산권 제도 체제 내에 도입하려는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생물다양성협약상 국제레짐 논의에도 이어지고 있다.

1.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945년 설립된 유엔전문기구의 하나인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식료품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를 개선하고 토지 및 품종 개량 기술을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1983년에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이래 1991년까지 이에 대한 개정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또한 1993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과의 조화를 위해 동 가이드라인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으로 개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고, 7년이라는 긴 협상기간 끝에 마침내 2001년에 식량 및 농업식물 유전자원의 보존, 이들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식량 및 농업에 관한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 이하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이 체결되었다.

27)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égétales, UPOV)은 식물신품종의 보호를 위하여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1960년 12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되었고, 1968년 8월 10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12월 7일 동 협약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하였고, 2002년 1월 7일 발효하여 1991년 개정(제네바) UPOV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농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동 조약 제9조 제2항에 의해 각 체약국은 식물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보호해야 하며, 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공평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문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동 조약은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자체제(Multilateral System)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유전자원의 자유로운 이전이 보장되는데,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표준물질 이전협정(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에 따라 허용되며, 이러한 물질이전협정에는 이익 공유 규정, 기타 조약의 관련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제12조 제3항(d)는 다자체제²⁸⁾로부터 이전받은 유전자원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유전자원의 유전물질 및 구성요소에 대하여 용이한 접근을 제한하는 어떠한 지적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정이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²⁹⁾에 의해 특허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미생물학적 방법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의 생산을 위한 방법 등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다자체제로부터 이전받은 유전자원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제13조는 다자체제하에서 제공받은 유전자원을 이용해 타인의 연구 및 육종을 제한하는 지적재산권을 창출한 지적재산권 보유자는 상업화에 의해 발생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분야의 특허권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의무를 생명공학 특허권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으로 TRIPs 협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차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³⁰⁾

28) 다자간 시스템은 각국 및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GIAR) 산하의 유전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35개 곡식과 29개 사료의 종자 및 번식식물을 저장·보존하고 있는 공동의 종자보관소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현경, 2007, “국제협약상 식물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24권 제2호, pp.361-380.

29)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 회원국은 또한 아래사항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a) ...생략

(b)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제법. 그러나 회원국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해 식물변종의 보호를 규정한다. 이 호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4년 후 재검토된다.

30) 박현경, 2007, “국제협약상 식물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24권 제2호, pp. 361-380.

2. 세계무역기구(WTO)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많은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해결방안 중 하나는, 전통지식과 원주민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독자적 보호제도(*sui generis system*)의 창설이다. 생물자원이 풍부한 반면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은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³¹⁾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과 TRIPs 협정을 상호 보완(*mutual supportive manner*)하는 방식으로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개발도상국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즉 각 회원국이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 b)³²⁾가 생물다양성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되어야 하고,³³⁾ 아울러 특허출원서에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출처공개, 공급국의 사전승인 증거, 이익공유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TRIPs 협정 제29조(특허출원요건)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³⁴⁾

이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들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는 지적재산권제도가 아닌 사적 계약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들며,³⁵⁾ TRIPs 협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노르웨이, EC, 스위스 등의 국가들은 TRIPs 협정 제27조 및 제29조가 특허출원인에게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출처공개를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출처공개가 특허성 판단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반대로 TRIPs 협정이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³⁶⁾

31) Götting, 2004. "Biodiversitaet und Patentrecht" *GRUR Int.*2004: 731, 735; 박갑록, 2004. "전통지식의 법적보호에 대한 접근 방법". 『지적재산권의 현재와 미래』(素潭 金明信先生 華甲記念論文集). 법문사. pp.112-115.

32)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 b)와 관련된 각국의 제안서에 대해서는 박진석, 2001, "뉴라운드 출범과 TRIPs 협정의 과제(상) - TRIPs 기설정외제와 신규외제를 중심으로 -" 『지식재산21』, p.3, pp.14-18.

33)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 특허부문, 산업계 측은 생물다양성협약과 TRIPs 협정이 각각 상이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충돌가능성도 없고 또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도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진석, 2001. "뉴라운드 출범과 TRIPs 협정의 과제(상) - TRIPs 기설정외제와 신규외제를 중심으로 -" 『지식재산21』, p.3, p.13.

34) 이에 대해서는 WTO/TRIPs Doc. IP/C/W/420(2004.3.2); IP/C/W/429(2004.9.21); IP/C/W/438(2004.12.10); 김시형, 2002, "DDA 협상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21』, p.3, pp.9-10.

35)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계약사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체제의 개발방안,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 보호와 보상방안센터 체제에 대해서는 오윤석, 2004. "유전자원의 이용 개발과 개발이익의 공유에 관한 사례 및 이익공유방안 고찰(I)/(II)/(III)" 『지식재산21』, p.1 참조.

3. 국제신품종보호동맹(UPOV)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농업에 있어서 생산성 증가를 위한 품종육성의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개인 육종가가 품종육성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육종가들이 안심하고 투자와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에 따라 나타난 산물이다. 국제적으로는 특정국가에서 신품종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다면 외국의 육종가들은 그 국가에 신품종 판매를 꺼리게 되고, 그 국가는 외국으로부터 신품종의 도입이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 재배농민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작목 선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된 각국의 법제를 통일화하기 위해 1961년 식물신품종보호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이 체결되었고, 동 협약은 1968년 8월 10일 발효되었다.³⁷⁾ 또한 1993년 12월 13일에 타결된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 b)는 각 회원국에게 특허법 또는 특별법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미국 등은 식물신품종을 특허법과 특별법에 의한 이중보호를 인정하는 입법형태를,³⁸⁾ 유럽은 특별법 위주로 보호하는 입법형태를³⁹⁾, 일본은 별도의 심사기준을 통해 보호하는 형태⁴⁰⁾를 취하고 있다.⁴¹⁾

4.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

2004년 생물다양성협약의 실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WIPO 정부간위원회에 WIPO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조약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출원서에 공개되어야 할 사항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기술적 연구조사를 의뢰하고, 이러한 연구조사의 결과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연구조사 의뢰에서 특허

36) 이에 대해서는 박영규. 2005.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허법의 역할” 『비교사법』 제12권 3호 p.533, p.550 참조

37) 우리나라는 2001년 12월 7일 기탁서를 기탁하고 2002년 1월 7일에 50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동 협약은 식물신품종 관련 발명의 보호요건을 별도로 완화하지 않는 한 특허법에 의한 품종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식물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UPOV 협약은 1972년과 1978년에 개정되었으며, 육종자 권리의 내실화와 보호대상 작물의 확대를 위해 다시 1991년에 개정되어 1998년 4월 24일 발효되었다.

38) 이에 대해서는 윤선희/이봉문. 2001. 『생명공학시대의 식물특허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지식재산권센터 연구보고서 01-10)』, p.14 참조

39) 유럽특허협약 제53조 b) 및 독일 특허법 제2조 제2호는 식물 또는 동물의 변종 및 식물이나 동물을 생산하기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방법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본조의 규정은 미생물학적 방법 또는 이러한 방법으로 획득되는 생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40) 일본 특허법은 식물신품종 관련 발명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제32조)에 포함시키지 않고, ‘식물신품종에 대한 산업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특허요건을 갖춘 경우에 유성번식식물 또는 무성번식식물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법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41) 자세한 내용은 박영규. 2005.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병존에 관한 고찰” 『법조』 통권591호, p.168 이하 참조.

출원서에 공개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시된 내용은 출원된 발명에 사용되어진 유전자원, 출원된 발명에 사용되어진 유전자원의 원산국(The 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출원된 발명과 관련된 전통지식, 혁신, 관행 및 그 출처 그리고 사전통지승인(PIC)의 증거 등이다.⁴²⁾ 위의 연구조사는 WIPO 회원국의 답변을 기초로 완료되었지만, WIPO 정부간위원회는 국제조약과의 조화 및 특허출원서에 공개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신에 논의를 필요로 하는 대상만을 제시하였다.⁴³⁾ 이후에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와 전통지식 보호와 관련하여 2008년까지 여러 차례의 WIPO 정부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 차이로 실질적인 규정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표2 WIPO 정부간위원회 -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의 정의 및 개념 정립,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 수집
제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D 사무국은 WIPO 정부간위원회에게 WIPO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조약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출원서에 공개되어야 할 사항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기술적 연구조사를 의뢰 • 개도국은 전통지식의 구전물이 문서화되지 않더라도 국제적으로 선행기술로 인정받아야 하고 각국에 의해 작성된 DB가 선행문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제7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은 유전자원과 관련된 분쟁을 WIPO 조정 및 중재 센터에서 해결토록 하자는 가이드라인 초안의 제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 • 미국/캐나다 등은 출처공개 요건의 유연성 거듭 강조 • 인도/브라질은 전통지식 보유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유자의 사전 동의 및 이익 공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을 강조
제8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출처에 대해 특허출원서에 공개하는 것이 요구되기 위해서는 PLT, PCT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출원인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불충분한 정보를 기재했을 경우의 대책으로 특허법 외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 •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견 차가 너무 커서 특허 심사 시 선행 기술로서 전통지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의 의제는 논의하지도 못함
제9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지식 보호의 목적, 원칙, 실질적 규정과 관련해 노르웨이는 선언서나 권고안 수준의 합의에 일단 도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나 브라질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는 실질적인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제1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은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차원의 규범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선진국은 전통지식에 대한 정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 의제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

주: 이에 대해서는 [http://www.wipo.int/meetings/en/topic.jsp?group_id=110\(2009.6.20\)](http://www.wipo.int/meetings/en/topic.jsp?group_id=110(2009.6.20)) 참조.

42) 이에 대해서는 WIPO/GRTKF/IC/4/11(2002.11.20), p. 3, [http://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4/wipo_grtkf_ic_4_11.pdf\(2009.4.20\)](http://www.wipo.int/edocs/mdocs/tk/en/wipo_grtkf_ic_4/wipo_grtkf_ic_4_11.pdf(2009.4.20)) 참조.

43) 이러한 대상에는 출원인에게 알려진 문서화되지 않은 전통지식 공개요건 정도, 공개요건과 관련된 국제법적 규정과 국내법적인 규정과의 차이, 개별 국가에서의 계약, 실시허락 및 타 법규의 규정에 대한 감시 및 실행에 있어서 특허제도의 잠재적인 역할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서는 WIPO/GRTKF/IC/4/11(2002.11.20), p.28 참조.

표3 WIPO 정부간위원회 - 출처공개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

제1-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요건의 회의의제로서의 채택 당위성만 논의됨
제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D 사무국은 WIPO에 특허공개요건의 여러 이슈 검토를 요청
제9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은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와 이익 공유에 대해 구속력 있는 규정의 도입 주장 • 미국/일본은 출처공개 도입에 반대하고 DB 구축의 입장을 취함 • 유럽/스위스는 PCT, PLT 등에 출처공개 의무를 형식적 요건으로 도입 강조
제10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일본은 출처공개 요건의 도입은 신기술 개발을 저해한다고 주장 • 브라질/인도/콜롬비아/NGO 등은 DB가 국제적 규범 설치 전에 구축되면 Biopiracy가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 필요하다고 주장 • 한국은 출처공개 요건화 이외의 방법 모색하자고 주장
제1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는 향후 이익 공유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서 선진국 개도국간의 의견 차이 계속되고 있음

주: 이에 대해서는 [http://www.wipo.int/meetings/en/topic.jsp?group_id=110\(2009.6.20\)](http://www.wipo.int/meetings/en/topic.jsp?group_id=110(2009.6.20)) 참조.

5. 유전자원,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에 대한 국제적 논의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혹은 「종자산업법」 등에 의한 보호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관련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예를 들어 유전물질, 즉 생물학적 물질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경우에 유전자원의 상업적 및 그 밖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이든 자기복제능력을 지니고 있는 유전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이익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유전자원으로서의 식물, 동물 혹은 미생물에 대해서 「특허법」, 「종자산업법」 혹은 제3의 방법에 의한 보호가 인정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등에 의한 보호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⁴⁴⁾ 하지만 유전자원으로서의 생물학적 물질이 외국에서 지적재산권법, 특히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진 경우에 유전자원의 제공국이 유전자원의 상업적 및 그 밖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유전자원,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 스위스는 특허협력조약(PCT) 등의 개정 및 보완을 전제로 하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출처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서에 공개하는 것(발명의 공개요건)을 각국이 요구할 수 있도록 각국의 국내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⁴⁵⁾ 이러한 스위스의 제안은 출원인이 부정한 의도로 유전자원, 전통지식의

44) Straus, 2004, "Angabe des Ursprungs genetischer Ressourcen als Problem des Patentrecht" *GRUR Int.* 2004: p792,

출처표시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등에 각 계약국은 이를 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특허권의 유효성을 유전자원, 전통지식의 출처표시와 결부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⁴⁶⁾

현재 유전자원,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와 관련하여 생명공학적 발명의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이하 '생명공학지침'이라 칭함)⁴⁷⁾ 근거 27은 "발명이 식물 또는 동물의 생물학적 물질을 그 대상으로 하거나 발명에 그러한 생물학적 물질이 이용되는 경우에, 생물학적 물질의 지리적인 출처가 알려졌다면 그러한 출처표시가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출원서에 기재될 수 있고, 이러한 출처표시의 기재여부는 특허출원서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지침을 국내입법화⁴⁸⁾하고 있는 이탈리아 특허법 제1조 제2항 i)은 발명이 동·식물 등의 생물학적 물질로부터 유래하는 경우, 이러한 생물학적 물질의 원산지, 생물학적 물질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원산지의 규정을 준수했다는 내용 및 생물학적 물질이 분리된 생물체(동·식물) 등의 출처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특허출원서에 원산지 등의 출처가 기재되지 않거나 생물학적 물질의 정당한 취득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고, 특허부여 후에는 취소,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제1조 제2항 v))라고 규정하고 있다.⁴⁹⁾ 반면에 노르웨이 특허법(제8조 (b))은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국내출원의 경우에 출원인에게 그가 분리 혹은 획득한 유전자원의 출처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⁵⁰⁾ 다만, 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유전자원의 출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특허출원절차나 부여된 특허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위증에 대한 형법의 일반적인 규정에 의해 형사적 제재조치를 받는다.⁵¹⁾

45) 스위스는 2003년 5월 5일에 특허협력조약 개정을 위한 워킹그룹(Working Group)에서 이러한 제안을 함. 이에 대해서는 WIPO/PCT/R/WG/4/13 (2003.5.5), <http://www.ige.ch/e/jurinfo/documents/WIPO-PCT-R-WG-4-13.pdf>(2009.4.11) 참조.

46) 특허법조약 제10조에 의해 각 계약국은 특허부여 이전에 방식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WIPO/PCT/R/WG/4/13(2003.5.5), p. 8(Nr. 16); 박영규, 2005,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허법의 역할" 『비교사법』 제12권 3호 pp. 533, 555-556 참조.

47) 생명공학적 발명의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이하 '생명공학 지침'으로 칭함). 동 지침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발명을 효과적이고 통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1998년에 회원국의 압도적인 찬성(찬성 380, 반대 110, 기권 15)으로 발효되었다.

48) 영국, 핀란드 등의 특허법은 생명공학 지침의 내용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에, 덴마크, 독일(DB Drucksache 15/1709(2003.10.15), S. 15(Nr. 10))은 생명공학지침 내용을 그대로 특허법에 규정하고 있다.

49) Straus. 2004. "Angabe des Ursprungs genetischer Ressourcen als Problem des Patentsrecht" *GRUR Int.* 2004: p.92, p.795.

50) CBD. 2003.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rrangements, including National and Regional Experiences. UNEP/CBD/WG-ABS/2/3: p.20, pp.1-30.

51) Midtø. 2004. "Norwegen - Aenderungen des Patentgesetzes" *GRUR Int.* 2004: p.345.

이러한 노르웨이의 특허법은 TRIPs 협정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출처공개와 사전 동의를 지적재산권 제도 내에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생명공학 특허 대부분이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국제출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출처공개 요구가 출원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생명공학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점에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⁵²⁾

결론적으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출처공개 및 이의 활용에 있어서의 사전 동의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출원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현실에 부응하는 법적 도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대응 전략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적인 분석을 좀 더 치밀하게 해야 하겠지만, 이는 우리나라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이용 가능성보다는 타국의 유전자원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생물종의 0.3~1%를, 식물자원의 3%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생명공학 기술력은 선진국의 60%, 세계 기술경쟁력 순위로 14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⁵³⁾

향후 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의 결과 구체적이고도 구속력이 있는 ABS 국제레짐이 탄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내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레짐이 탄생할 경우 이는 생물다양성협약의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는 지나치게 혁신적이고 광범위한 ABS 국제레짐은 이론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다. 본 가이드라인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ABS 국제레짐이 생물다양성협약상 조항의 구체화를 넘어서 본 가이드라인보다 좀 더 강화된 원칙을 담아야

52) 박용주. 2004. "DDA 지재권분야 협상동향 -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을 활용한 특허의 출처공개를 중심으로 -" 『지식재산2』, p22, p26; 박영규. 2005.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허법의 역할" 『비교사법』 제12권 3호, pp.558-559.

5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7.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지재권적 보호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pp.150-151.

할 당위성은 없다. 이해 당사국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좀 더 유연한 입장에서 본 가이드라인에 합의했을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갖는 ABS 국제레짐으로 발전하면 당사국 국익에 따라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전자원의 접근 보장과 이익 공유가 공히 달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지구사회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통일된 지적재산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 특히 유전자원의 보유국이 잘 정비된 지적재산권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적재산권 제도에 의존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문제 해결보다는 모델 물질이전협정(MAT) 개발 등을 통한 국제최소 기준의 충족을 담보하는 사적자치에 의한 해결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안으로 보인다. 현재 ABS 국제레짐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의제의 하나인 이행준수의 문제의 경우에도 이행준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은 필요하지만 현재의 국제법 질서의 틀 안에서 포섭 가능하면서 다른 환경 협약의 이행준수 체제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 종료 시점이 2010년 제10차 당사국 총회로 설정이 되어 있고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ABS 국제레짐의 탄생 가능성이 커 보이는 현재 시점에서 향후 ABS 국제레짐 탄생에 대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는 생물다양성협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들의 논의를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이들의 논의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이러한 점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의 포컬 포인트(focal point)로서 다양한 국제환경조약 및 국제기구에 대한 대외 문제를 담당하고 있고, 생물다양성협약뿐만 아니라 WIPO 등 관련 조약 또는 기구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한 부처 내에서 다룰 수 있는 외교통상부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범정부 지원단을 담당하고 향후 탄생이 예상되는 국제레짐의 우리 정부의 포컬 포인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ABS 국제레짐의 국내 이행 정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여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특허청, 농촌진흥청, 국립수목원 등 관련 부처가 범정부 지원단의 프레임워크하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는 관련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 체계는 산업계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V. 결 론

생물다양성협약상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레짐에 관한 논의는 서로 다른 입장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인해서 많은 난관에 부딪혀 왔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2010년 새로운 ABS 국제레짐이 탄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문제는 어떠한 성격의 그리고 무슨 내용을 담은 ABS 국제레짐이 성립하는가에 달려 있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논의는 생물다양성협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진행되어 왔으며 이미 이들에 의해서 성립된 국제조약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협약 내에서 ABS 국제레짐의 논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상의 논의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서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가 복잡하고 어려운 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 정부차원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구조 속에서 생물다양성협약상 ABS 국제레짐의 논의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포괄적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포괄적 대응체계는 향후 ABS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ABS 국제레짐이 탄생된 이후에도 국내외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립환경연구원 역. 1995.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해설서(IUCN, A Guide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p.47
- 김병일. 2005. “전통지식과 특허”. 「창작과 권리」 제39호, p.2, p.5.
- _____. 2004.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26호, pp.143-146
- 김시형. 2002. “DDA 협상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21」, p3, pp.9-10.
- 박갑록. 2004. “전통지식의 법적보호에 대한 접근 방법”. 「지적재산권의 현재와 미래」(素潭金明信先生 華甲記念論文集). 법문사, pp.112-115.
- 박영규. 2005.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허법의 역할”. 「비교사법」. 제12권 3호, p.533, pp.546-547
- _____. 2005.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병존에 관한 고찰”. 「법조」. 통권591호, p.168.
- 박용주. 2004. “DDA 지재권분야 협상동향 -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을 활용한 특허의 출처공개를 중심으로 -”. 「지식재산21」, p.22, p.26.
- 박진석. 2001. “뉴라운드 출범과 TRIPs 협정의 과제(상) - TRIPs 기설정의제와 신규의제를 중심으로 -”. 「지식재산21」, p.3, p.13.
- 박현경. 2007. “국제협약상 식물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24권 제2호, pp.361-380.
- 오윤석. 2004. “유전자원의 이용 개발과 개발이익의 공유에 관한 사례 및 이익공유방안 고찰 (I)/(II)/(III)”. 「지식재산21」, p.1.
- _____. 2004.6.25.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관한 고찰”.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포럼/세미나 자료」, p.1, p.17.
- 윤선희, 이봉문. 2001. 「생명공학시대의 식물특허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지식재산권센터 연구보고서(01-10))」, p.14.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7.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지재권적 보호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pp.150-151.
- Zhou Lin. 2004. “중국에서의 전형적인 지식 보존: 식량과 농업에 대한 지적 자산을 중심으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법적 보호 - 2004년도 한·중 국제공동연구 보고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 연구센터/중국사회과학원 지재권센터), pp.38-41.
- Aoki. 1998. “Neocolonialism, Anticommons Property, and Biopiracy in the (Not-So-Brave) New World Order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6: 11

Blakeney. 1998. “Biodiversity Rights and Traditional Resourc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Bio-Science Law Review*: 2: 52

Dunagan. 2009. “Bioprospection versus Biopiracy and the Unites versus Brazil: Attempts at Creating 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pplicable Worldwide When Differing Views Are Worlds Apart- And Irreconcilable?” *Law and Business Review of the Americas* 15: 603

Götting. 2004. “Biodiversitaet und Patentrecht” *GRUR Int.* 2004: 731, 732

Midtbø. 2004. “Norwegen - Aenderungen des Patentsgesetzes” *GRUR Int.* 2004: 345

Straus. 1998. “Biodivers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AIPPI Yearbook 1998/IX*: 359: 99, 102, 103

_____. 2004. “Angabe des Ursprungs genetischer Ressourcen als Problem des Patentrecht” *GRUR Int.* 2004: pp.792-795

CBD. 2004. COP 7 Decision VII/19

_____. 2006. COP 8 Decision VIII/4

_____. 2008. COP 9 Decision IX/12

_____. 2008. Report of the Meeting of the Group of Legal and Technical Experts on Concepts, Terms, Working Definitions and Sectoral Approaches, UNEP/CBD/WG-ABS/7/2, pp.1- 56

_____. 2009. Report of the Meeting of the Group of Legal and Technical Experts on Compliance 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UNEP/CBD/WG-ABS/7/3, pp.1-17.

_____. 2009. Report of the Seventh Meeting of the Ad-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UNEP/CBDD/WG-ABS/7/8, pp.1-56.

_____. 2003.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rrangements, including National and Regional Experiences, UNEP/CBD/WG-ABS/2/3, pp.1-30.

_____. 2001. Report on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mplementation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Arrangements, UNEP/CBD/WG-ABS/1/4, pp.1-20.

_____. 2002. Report of the Open-ended Expert Workshop on Capacity-Building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UNEP/CBD/ABS/EW-CB/1/3, pp.1-16.

WIPO. 2000.9.14. "Traditional Knowledge and the Need to Give it Adequat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WO/GA/26/9, pp.1-21.

_____. 2001.4. "Intellectual Property Needs and Expectations of Tradi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Knowledge Holders: WIPO Report on Fact-finding Miss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Knowledge(1998/1999)." pp.1-99.

WTO/TRIPs Doc. IP/C/W/420(2004.3.2); IP/C/W/429(2004.9.21); IP/C/W/438(2004.12.10)

WIPO/GRTKF/IC/4/11(2002.11.20)

WIPO/GRTKF/IC/4/11(2002.11.20)

WIPO/PCT/R/WG/4/13 (2003.5.5)

WIPO/PCT/R/WG/4/13(2003.5.5)